

의안번호	제 호
의결연월일	2019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19. 10. 7.

#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19. 10. 7.

제 출 자: 고성군수

## 1. 개정이유

자치분권 시대 도래에 따라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불명확한 기준을 정비하기 위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자치센터 운영 주체 명확화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 운영 자율성 보장(안 제7조제1항)
- 나. 수강료 환불 규정 신설(안 제10조의2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8조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
  - 1) 기획감사담당관(법무개혁담당): 규제심사
  - 2) 복지지원과(여성가족담당): 성별영향분석 평가
- 라. 기 타
  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19-1180호

가) 예고기간: 2019. 9. 3. ~ 9. 23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#### 4. 본 문: 붙임과 같음

##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익”을 “주민편익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“00읍·면주민자치센터” 또는 “00주민자치센터”로”를 ““00읍·면주민자치센터”로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기능중”을 “기능 중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①자치센터의 시설은 읍·면장이 운영하며, 프로그램은 위원회에서 운영한다. 단,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·면은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사용료 등)”을 “(수강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자치센터의 시설 등은”을 “자치센터는”으로, “읍·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, 수강료 등(이하 “사용료 등”이라 한다)을”을 “위원장은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사용료 등”을 “수강료는 별표에 따라 읍·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되, 수강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⑦위원장은 수강료의 징수·관리·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, 수강료의 징수·관리·지출 등을 위원장 명의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수강료의 환불) 위원장은 이용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거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을 경우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별표3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주민”을 “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”으로, “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”을 “수강료를”로 한다.

제17조제3항 중 “아니 되며, 특히,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/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를 “아니된다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내지”를 “또는”으로, “한하여 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해태하였거”를 “게을리하였거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[별표] (개정 전)

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(제10조제3항 관련)

1. 시설사용료 : 무료
2. 수강료

구분	수강시간(월)	수강료(월)	비고
수강료	15시간 이하	15,000원 이하	
	20시간 이하	20,000원 이하	
	25시간 이하	25,000원 이하	
	30시간 이하	30,000원 이하	
	30시간 이상	35,000원 이하	

■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[별표] (개정 후)

수강료 징수 범위(제10조제3항 관련)

구분	수강시간(월)	수강료(월)	비고
수강료	15시간 이하	15,000원 이하	
	20시간 이하	20,000원 이하	
	25시간 이하	25,000원 이하	
	30시간 이하	30,000원 이하	
	30시간 이상	35,000원 이하	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<u>주민편익</u>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행정복지센터·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주민편익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설치 등) ① (생략)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“00읍·면주민자치센터” 또는 “00주민자치센터”로 한다.</p>	<p>제4조(설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“00읍·면주민자치센터” 로 ----- -----.</p>
<p>제5조(기능) ① (생략) ②제1항의 <u>기능중</u> 당해 읍·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. ③ (생략)</p>	<p>제5조(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<u>기능 중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조(운영) ①<u>자치센터의 시설</u> 및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·면장이 운영(이하 “자</p>	<p>제7조(운영) ①<u>자치센터의 시설은</u> 읍·면장이 운영하며, 프로그램은 위원회에서 운영한다. 단, 주</p>

치센터의 운영”이라 한다)한다.

②·③ (생략)

④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·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⑤ ~ ⑦ (생략)

제10조(사용료 등)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, 읍·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, 수강료 등(이하 “사용료 등”이라 한다)을 징수할 수 있다.

②제1항 중 “사용료”는 자치센터의 시설·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·면장이 징수하며, “수강료”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.

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

민자치회 시범실시 읍·면은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수강료) ①자치센터는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은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<삭제>

<삭제>

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표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“사용료”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·면장이 정하며, “수강료”의 경우는 읍·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.

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⑤·⑥ (생략)

⑦ 읍·면장은 “사용료”징수·관리·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징수·관리·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, “수강료”의 징수·관리·지출 등을 위원회 명의로 한다.

<신 설>

제11조(이용 등) ①·② (생략)

③ 수강료는 별표에 따라 읍·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되, 수강료-----  
-----.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⑦ 위원장은 수강료의 징수·관리·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, 수강료의 징수·관리·지출 등을 위원장 명의로 한다.

제10조의2(수강료의 환불) 위원장은 이용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거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을 경우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별표3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하여야 한다.

제11조(이용 등) ①·② (현행과



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5.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(생략)

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  
----- 게을리하였거-----  
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##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  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「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재정수반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.

작성자: 행정과장 이 을 상

## 참고

## 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 제8조

제8조(사무처리의 기본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.